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내용	마을 소재지				사업자 (마을명)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변경내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대표자)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대표자 주민등록표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신청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유의사항

시설내용

가. 생활편의시설:

나. 농어촌체험 기반시설:

다. 마을공동시설 중 숙박서비스시설:

라. 음식 제공 및 즉석식품 제조 · 판매 · 가공시설:

관련 법조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마을협의회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 (이하 생략)